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5-5
------	------

제출년월일 : '1995. 2. 15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이유

- 제증명민원 발급시 민원서류의 인증, 수입증지 첨부, 소인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복합인증기』를 설치 사용함으로써 인력 및 시간절감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할 수 있음
- 최근 동사무소『민원사무전용 동장직인』의 관리소홀로 직인의 도용으로 증명민원의 허위발급과 직인의 분실로 인한 사회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공인관리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 사고의 재발을 사전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구 본청 민원실에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민원실전용공인을 각인하여 복합인증기에 부착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공인 관수자의 유고시에 대행자를 지정 동사무장 유고시▷민원주임
 민원주임 유고시▷총무주임

3. 관계법령

- 사무관리규정 제35조 제2항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증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조례에 의거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사용할 시 공인은 민원담당부서의 민원실 전용공인을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각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같은조 제 6항중 “제1항 내지 제4항을” “제1항 내지 제5항”으로 한다.

제13조 제2항의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사무장의 유고시 민원전용 동장직인의 관리대행은 민원주임이 하고 민원주임 유고시 총무주임이 대행한다.

같은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동사무소 민원전용 동장직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수자와 사용자간에 근무시간 중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인수인계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인계받는 사용자가 관수 책임자가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p>제2조(공인의 비치사용)①~④(생략) <u>(신 설)</u></p> <p><u>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u></p>	<p>제2조(공인의비치사용)①~④(현행과 같음)</p> <p><u>⑤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조례에 의거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사용할 시 공인은 민원담당 부서의 민원실 전용공인을 수입 증지 요금계기에 각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u></p> <p><u>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u></p>
<p>제13조(공인의 관수자)①(생략) <u>②공인 관수자의 유고시에는 공인 관수자로 미리 지정된 자가 그 사무를 대행한다.</u> <u>(신 설)</u></p>	<p>제13조(공인의 관수자)①(현행과 같음)</p> <p><u>②공인 관수자의 유고시에는 공인 관수자로 미리 지정된 자가 그 사무를 대행한다.</u></p> <p><u>다만, 동사무장의 유고시 민원사무전용 동장직인의 관리대행은 민원주임이 하고 민원주임 유고시 총무 주임이 대행한다.</u></p> <p><u>③동사무소 민원전용 동장직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수자와 사용자간에 근무시간 중에는 별지 제7서식에 의거 인수인계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인계받는 사용자가 관수 책임자가 된다.</u></p>

(제7호 서식)

민원사무전용 동장직인 인수.인계대장